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16
----------	-------

발의연월일 : 2026. 10. 16.

발 의 자 : 한민수 · 이정현 · 이연희
송옥주 · 황 회 · 문진석
임오경 · 박균택 · 박해철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ETN과 ETF 증권의 분할·병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고가의 상품을 신규 종목으로 별도 상장하거나 저가의 상품을 상장폐지하고 재상장하는 비효율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존 투자자의 거래 단절, 운용보수 손실, 추적오차 발생 등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등의 병합 및 분할이 허용되고 일본의 경우 우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서 대체투자신탁수익권의 병합·분할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234조의3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에 제3장의3(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1(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 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 중 「상법」 제469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병합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상법」 중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에 미달하는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증권을 처분한 후 그 단수에 대한 대금을 해당 증권에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상장지수증권의 1

증권에 미달하는 단수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그 밖의 공정한 가액으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2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

- ①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 주식의 분할에 관하여는 「상법」 제32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1주나 1좌에 미달하는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증권을 처분한 후 그 단수에 대한 대금을 해당 증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의 1주나 1좌에 미달하는 단수 부분에 대하여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그 밖의 공정한 가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 등의 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1 및 제2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3장의3 증권시장에 상장된</u> <u>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특례</u> <u>제165조의21(증권시장에 상장된</u> <u>파생결합증권의 분할 또는 병</u> <u>합) 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u> <u>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u> <u>상장된 것(이하 “상장지수증권”</u> <u>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주식</u> <u>·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u> <u>법률」에 따라 해당 증권을 분</u> <u>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u> <u>우 상장지수증권 중 「상법」</u> <u>제469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u> <u>병합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u> <u>「상법」 중 사채권자집회에</u> <u>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u> <u>다.</u> <u>②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상</u> <u>장지수증권의 1증권에 미달하</u> <u>는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u> <u>해당 증권을 처분한 후 그 단</u> <u>수에 대한 대금을 해당 증권</u>

<신 설>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
수증권의 발행인은 상장지수증
권의 1증권에 미달하는 단수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그 밖의 공정한
가액으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제234조의3(상장지수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분할 또
는 병합) ①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
회사 주식(이하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회사 주식의 분할에 관하
여는 「상법」 제329조의2제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상
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1주나 1
좌에 미달하는 단수가 발생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증권을 처분

한 후 그 단수에 대한 대금을
해당 증권의 소유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
수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상
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1주나 1
좌에 미달하는 단수 부분에 대
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가 그 밖의 공정
한 가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